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계약의 대행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·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'22년 마을 축제 경연대회 의상을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매대행을 진행하면서 사후정산 서류가 맞지 않음에도 구매대행비를 지급하는 등 구매대행 절차 미준수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물품 구매대행 시 관련 절차 진행 및 사후정산 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것